

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-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

국가기술표준원 (2021. 07. 16.)

 국가기술표준원은 [유아용 섬유제품] 및 [아동용 섬유제품]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(안)을 7월 16일 부로 행정예고했다.

-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(유아용 섬유제품)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(아동용 섬유제품)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(안)을 행정예고 하였다.
- 개정취지
 - [유아용 섬유제품] 및 [아동용 섬유제품]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, 안전기준 등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 - 섬유제품 품질표시사항 세부 표시방법 예시를 개정(안)에 추가함으로써 실제 라벨 표시할 경우 업체에서 참고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.



❖ 어린이제품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(아동용 섬유제품) 신규조문 대비표

- 주요사항 요약 -

현행

개정안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"3.용어의 정의"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 제품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. 다만,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<신설>

4. 안전요건

4.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.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[표 1]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.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(어린이용 가족제품)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(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%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% 미만을 제외하는 문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유해 물질을 적용 대상으로 본다.). 단,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에서 밀창은 제외한다.

유해물질명	허용치
총납함유량(mg/kg)	900하
기타항목생략	

주

6. 금속 기질, 고분자 기질, 페인트 및 유사코팅, 기타 재료(목재 등) 부분에 적용하며,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단 금속기질의 경우에는 납 기준치를 300 mg/kg 이하로 한다.

6. 표시사항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르면,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 (단,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.)

<신설>

<신설>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. 다만,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,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가정복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(완구)의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4. 세부분류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는 [표 1]을 적용한다. 다만, [표 1]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는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주수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 분류를 따른다.

5. 안전요건

5.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6.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[표 2]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.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(어린이용 가족제품)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단,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%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% 미만인 부분도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으로 본다.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범위에서 밀창은 제외한다.

유해물질명	허용치
총납함유량(mg/kg)	1000하
기타항목생략	

주

6. 금속 기질, 고분자 기질, 페인팅 및 유사코팅, 기타 재료(목재 등) 부분에 적용하며,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단, 페인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, 총 납 함유량허용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.

7.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

7.1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주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른다. 다만, 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6 (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)의 표시사항을 따른다.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(단,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.).

7.2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36(완구) 제 2부. 4.2 시험(작은 부품시험)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[표 3](1)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7.3.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[표 3](2)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[표 3] 취급상 주의표시

(1)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주의사항

취급상주의사항
"주의작은부품이탈락되면삼킬수있음"

(2)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

취급상주의사항
주의신발이에스컬레이터등에끼일수있음